# 설비 이설 계 약 서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토(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설비이설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칭함)을 체결한다.

- 다 음 -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본 계약 제2조의 대상설비에 대하여 갑이 이설을 요청할 경우 을이 최선을 다하여 실시 함으로써 생산효율 극대화에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계약대상설비 ]

갑이 소유하고 있는 CVD 공정의 아토 MAHA-HP 설비로 한다.

#### 제 3 조 [계약기간]

- 3-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6년 12월 01일부터 2007년 12월 31 일 까지로 한다.
- 3-2. 계약기간 만료시,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연장 또는 재계약에 관하여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3-3. 본 계약 체결 이전 발생한 이설비용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

## 제 4 조 [ 계약 금액 ]

4-1. 작업범위 : 이설작업전 사전검수, 설비해체, 이설, Set-Up 및 사후검수까지로 한다.

단, 라인간 이설시 운반작업은 갑이 진행하며, 비닐포장비는 을이 부담한다.

4-2. 작업주체 : 이설작업은 을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갑은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4-3. 이설비용

- 아토 MAHA-HP

: ₩28,000,000/ 台

#### 제 5 조 [ 기술서비스의 제공 ]

#### 5-1. 작업자의 자격

1) 갑의 작업현장으로 파견하는 을의 작업자는 을의 책임하에 갑에게 필요한 인적사항을 사전통보한다.또한 을의 작업지원을 위한 을의 관련회사의 직원도 을에 준하는 자격을 갖는 것으로하다.

#### 5-2. 대응시간

을은 갑이 요구하는 일정 기간내에 설비가 이설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토록 하며, 갑은 을의 원활한 이설작업의 수행을 위해 최소한 1주 이전에 이설계획을 을에게 통보한다.

#### 5-3. 보증사양

- 1) 을은 갑이 사전검수에서 점검한 장비 상태를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2) 작업종료의 기준은 설비 이설전 합의사양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 5-4. 작업보고서의 제출

을의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작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갑의 담당자로부터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보고서에는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그리고 준비작업시간, 작업자명, 담당자명을 구분하여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5-5. 하자보증

작업완료후 이설전 합의사양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을은 갑과 합의하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 6 조 [ 대금청구 및 지급 ]

6-1. 갑의 대금지급 규정에 준하여 작업검수 완료 후 대금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계약체결 이전 완료된 내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 내역을 소급 적용한다.]

- 6-2. 을은 대금청구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였다.한다.
  - 1) 대금청구서
  - 2) 작업보고서
  - 3) 거래명세표 (필요시)
  - 4) 세금계산서
  - 5) 기타 갑이 요청하는 서류

#### 제 7 조 [의무 및 책임]

- 7-1. 을은 기술서비스를 제공 중 갑의 의문사항에 대해 최선의 답변 및 문제해결을 하여야 한다.
- 7-2. 을의 실수로 장비 및 부품을 파손시키거나 설비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을의 책임하에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7-3. 갑은 을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고장 현상을 자세히 전달해야 하며, 그 내용이 대외비일 경우는 갑의 보안규정에 준한다.
- 7-4.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기술 서비스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 1) 전쟁,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2)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 정부의 지시에 의하는 경우



# 제 8 조 [ 보안책임 ]

을은 갑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진다.

# 제 9 조 [ 안전책임 ]

- 9-1. 을은 갑의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 9-2. 설비를 수리중에 을의 안전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책임은 을이 진다.

#### 제 10 조 [ 계약의 해지 ]

- 10-1 갑 또는 을 양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 2.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 3. 파산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 4.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10-2 갑 또는 을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4일의 기간을 두고 이를 최고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서면통지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한 수 있다.

#### 제 11 조 [ 계약의 양도 ]

쌍방간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책임 권한 및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 제 12 조 [ 분쟁 및 조정 ]

- 12-1.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12-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에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해결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 서명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7년 02월 일





주식회사 아토 대표이사





